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98호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규 칙 제 1 0 1 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3

훈 령

- 훈 령 제 3 6 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4
- 훈 령 제 3 6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49

공 고

- 공 고 제 1 7 8 3 호 남동구립도서관 주말단시간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51
- 공 고 제 1 7 9 6 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52
- 공 고 제 1 7 9 8 호 간석초교부근 다복마을구역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53
- 공 고 제 1 8 0 0 호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55
- 공 고 제 1 8 0 2 호 도림2지구 소3-7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수용재결 신청 서류 열람 공고 57
- 공 고 제 1 8 0 5 호 보상계획 열람공고(새말소공원 조성사업) 68
- 공 고 제 1 8 0 8 호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72
- 공 고 제 1 8 0 9 호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76
- 공 고 제 1 8 1 7 호 공시송달공고 77
- 공 고 제 1 8 2 0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 소매어시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80
- 공 고 제 1 8 2 5 호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_복지정책과 82

고 시

- 고 시 제 1 3 3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고시_공영개발과 94
- 고 시 제 1 3 4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고시_공영개발과 95
- 고 시 제 1 3 5 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명:새말소공원 조성사업]사업 실시계획 고시(정정)_도시관리과 96

고 시

- 고 시 제 1 3 6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 98
 도면 고시_도시관리과
- 고 시 제 1 3 7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_토지정보과 100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규 칙

남동구 규칙 제101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 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조사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세무조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구청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 대상은 법 제147조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

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 세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1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2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지방세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 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남동구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자
3.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등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5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세무조사 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범위, 기간 및 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 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

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따라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세무조사 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세무조사 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사전통지 생략 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세무조사의 기간)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2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세무조사 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세무조사 기간연장의 제한) ①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 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색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1. 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2호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조사 사무의 관리

제30조(조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세무조사 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세무조사 내용의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세무조사의 진행 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세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세무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법 제8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9조(과세정보의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의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구청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구청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제41조 관련)**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가. 조사공무원은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인격의 도야와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다.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세정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여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권위주의적 언행을 삼가하고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마. 조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집행과정에서 법령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나.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사예고 이외에는 조사계획이나 준비조사 내용 등을 조사시작 전에 납세자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조사계획 수립 후 실지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선정이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조사권의 근거와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 세무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고체계를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수색·영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하지 않고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때에는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 외에 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사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 조사 진행 중 조사사항에 대하여 납세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문제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한다.

아. 납세자의 소명내용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한 후 이를 솔직하게 받아들여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소명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사. 납세자의 이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하.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과세근거를 확보하여 추후 불복이나 쟁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조사공무원은 하루의 조사가 끝나면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여야 하며,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차. 조사공무원은 지시에 따라 조사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치는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되 고지하기 전에 조사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라.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사복명 시 세법 등 개정건의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 법 인 명 : (인)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0000년 월 일부터 ~ 0000년 월 일까지	제 조 업 ()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건 설 업 ()	
○ 연 락 처 :	판 매 업 ()	
○ e-mail(담당자) :	운 송 업 ()	
	기 타 ()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남동구청장

(297mm×210mm, 가로서식)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V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0개년) 및 각 서식 작성시 남동구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0000년도부터 0000년도까지 0년분 작성)

※ 작성 후 보낼 곳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세무과
우편번호 : 21589

※ 문의사항 전화 : (032)- FAX) 032-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급여대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4)), 유형고정자산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시설물·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건설업법인의 경우 공사원가명세서상의 회계과목에 대한

계정별원장 포함) 및 보조장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서면 세무조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법인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목차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명세서

※ 서식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명세서(남동구 소재 사업소) 작성요령

○ 매년 7월1일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모든 사업소에 대하여 각각 작성

- 자본금 및 종업원수는 매년 7월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① 정당 세액은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15조 제2호에 따른 세액 기재

② 기납부 세액은 당해연도 기납부 세액을 기재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명세서(남동구 소재 사업장)

0000년

(단위 : 원)

사업장		자본금 (a)	종업원수 (b)	정당 세액 (c)		기납부 세액 (d)		차인세액 (e)(c-d)	
명칭	소재지			주민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297mm²×210mm², 가로서식)

※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남동구 소재 사업소) 작성요령

○ 사업소 연면적 330m²이하의 사업소 소재지, 명칭, 연면적 만 기재하고, 331m²이상은 제곱미터 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과세제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과세제외 내역 : 과세제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남동구 소재 사업장)

0000년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 개시일	연면적 (a)	①과 세 제 외 면 적				과세면적 c(a-b)	②정당 세액 (d)	기납부 세액 (e)	납부 일자	차인세액 f(d-e)
				기숙사	구내식당	기타	소 계 (b)					

(297mm×210mm, 가로서식)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남동구 소재 사업소)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종업원수 산정은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국외근무자 제외, 수시 고용종업원 포함)

※ 수시고용 종업원수 산정방법 :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 인원수

④ 산출세액

- 0000년까지 : ③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0000년이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35백만원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남동구 소재 사업장)

0000년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 말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소계														
③ 종 업 원 수	상시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297mm²×210mm², 가로서식)

※ 서식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 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 ① 소득세 납부액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 기 타 : 예) 기타소득, 연금소득,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 법인세법 73조, 98조 :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② 산출 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세율

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연도	0000년	사업장	남동구	사업장명	
------	-------	-----	-----	------	--

구 분 별 월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 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297mm²×210mm²,

가로서식)

※ 서식 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명세서 작성요령

○ 매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 종원업수, 사업장 연면적은 각각 남동구 관내 전체와 전국 전체의 종업원수, 사업장 연면적을 작성
- 사업장별 안분비율 계산
= [(남동구 관내 종업원수/법인의 총 종업원수)+남동구 관내 건축물 연면적/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2
-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재
 - ① 정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에 따른 세액 기재
 - ② 기납부 세액은 당해연도 기납부 세액을 기재

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명세서

0000년

(단위 : 원)

사업장			종업원수		사업장 연면적		사업장별 안분비율 (남동구비율) (%)	법인세 과세표준			정당 세액 ㉠	기납부 세액 ㉡	차인 세액 ㉢(㉠-㉡)
명칭	소재지	사업 개시일	(남동구) 종업원수 (명)	(전국) 총종업원수 (명)	(남동구) 사업장 (㎡)	(전국) 총사업장 (㎡)		각사업연도 소득	토지등양도 소득	미환류 소득			

■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압수·영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 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서명날인거부사유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직인

210mm×297mm [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압수·영치 목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210mm×297mm [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예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직인

210mm×297mm [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예치목록

일련번호	물건명	수량	제출자	소유자	비고

210mm×297mm [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명부

(단위: 원)

[illegible]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2018.12.24. 「지방세 기본법」 세무조사 관련 조항의 신설·개정 사항 반영과 국세 및 우수 자치단체의 제도를 반영하고 2018년 감사원 세무조사 관련 지적사항 반영 및 현행 불합리한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을 도모하며, 법적안정성·예측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보완
 -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제11조제1항)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대상의 조사누락 방지를 위한 조사책임자의 관리의무(제36조제2항)
 -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을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규정(제38조)
- 국세 및 우수 지자체 합리적인 제도 반영
 - 중복조사 문제 해결 위해 “부분세무조사 제도” 신설(제13조)
 - 자치단체별 기본형식 및 용어 통일(제14조)
- 「지방세 기본법」 등 개정사항 반영
 - 세무조사 중지 중 자료제출 요구 등 금지(제25조)
 - 조사 전 납세자 권리현장 요지 낭독의무 신설(제34조제1항)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10월 18일

남동구 훈령 제36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남동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남동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각각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각각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각각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각각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무직근로자 정수표(제8조 제3항 관련)

1. 공무직 정수

부 서 별		계	행 정 보조원	단 순 노무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동현장 인 력
총 계		277	61	28	19	140	29
본청 소계		223	36	28	19	140	
홍보미디어실		1		1			
안전총괄과		4		4			
민원봉사과		2	1	1			
청소과		140				140	
일자리정책과		4	4				
생활경제과		3		3			
환경보전과		1	1				
복지정책과		6	6				
사회보장과		4	4				
가정복지과		4	4				
보육정책과		1	1				
평생교육과		5	5				
건 설 과		21	2		19		
도시관리과		2		2			
도시경관과		14	1	13			
공원녹지과		4		4			
교통행정과		7	7				
직속기관 소계		23	23				
보건소	보건행정과	2	2				
	건강증진과	18	18				
	간석건강관리센터	3	3				
사업소 소계		3	2				1
남동공단지원사업소		1					1
남동다문화사업소		2	2				
동 소계		28					28
구월1동		2					2

구월2동	0					0
구월3동	2					2
구월4동	1					1
간석1동	2					2
간석2동	2					2
간석3동	2					2
간석4동	2					2
만수1동	1					1
만수2동	0					0
만수3동	1					1
만수4동	1					1
만수5동	2					2
만수6동	1					1
장수서창동	1					1
서창2동	2					2
남촌도림동	2					2
논현1동	1					1
논현2동	1					1
논현고잔동	2					2

2. 청원경찰의 정수

부 서 별	합 계	경비청원경찰	기 타
총 계	21	21	
본청 소계	21	21	
총 무 과	21	2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폐지이유

- 구월아시아드선수촌 등 신규노선 증가 및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을 위한 환경미화원 인력 증원 요청에 따라 공무원(환경미화원) 정수를 조정(증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무원 근로자 정수조정(별표2)

- 293명 → 298명(+ 5명)

※ 환경미화원 135명→140명(+ 5명)

구분	총계	소계	공무직					소계	청원경찰
			행정 보조원	단순 노무원	도로 보수원	환경 미화원	동현장 인력		
변경전	293	272	61	28	19	135	29	21	21
변경후	298	277	61	28	19	140	29	21	21
증감	5	5	-		-	5	-	-	-

- 남동구 자치법규 제명 등 행정기관 명칭통일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10월 18일

남동구 훈령 제36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은 폐지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폐지이유

-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2019.8.2. 제정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유사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 폐지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783호

남동구립도서관 주말단시간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남동구립도서관 주말단시간근로자 공개채용에 따른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4.

남 동 구 청 장

1. 최종합격자 명단

근무장소	근무분야	응시번호	성 명	비고
남동구 평생교육과 (간석3동 어린이도서관)	자료실 운영보조	간석3-1	조○희	

2.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가. 제출일시 : 2019. 10. 17(목) 15:00

나. 제출장소 : 남동구청 평생교육과(남동구평생학습관 3층)

다.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일반용), 기본증명서 각 1부

라. 문 의 : 남동구청 평생교육과(☎ 453-6431)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796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최고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9. 10. 1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0. 15. ~ 2019. 10. 30.(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소유자	주 소(본거지)	반송사유	비 고
지게차	인천04바3152	김*철	남동구 논현로 **	폐문부재	

4.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미필하여 동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나. 가까운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만일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등록말소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798호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7-140호(2017.12.11.)로 사업시행 인가된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05번길 19 일원
3. 사업 시행자 :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10. 15. ~ 2019. 11. 1. (15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453-2803)
7. 열람서류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5회 수용재결 신청사업 열람공고 대상

구분	사 업 명	토지			지장물		영업권		사업시행자 제시액합계	사업시행자
		필지	면적(m ²)	제시액	건수	제시액	건수	제시액		
1	간석초교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	-	-	-	-	1	5,950,000	5,950,000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32)469-4693, fax(032)469-4695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800호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0. 15. ~ 2019. 10. 3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소유자	주 소(본거지)	반송사유	직권말소예정일
지게차	인천04가1722	김*근	남동구 호구포로 **	폐문부재	19.10.27.이후
굴착기	인천02나4549	두남건설	남동구 남동대로 **	수취인불명	19.10.27.이후
지게차	인천04라6603	중앙건기(주) (이해관계인)	남동구 남동대로 **	주소불명	19.12.27.이후
지게차	인천04가3867	금광실업	남동구 아암대로 **	수취인불명	19.10.27.이후
지게차	인천04마1995	다이스웰	남동구 논현고잔로 **	주소불명	19.10.27.이후

4. 공시송달내용

-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 기계에 대해 같은법 제13조제5항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 통지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5호, 제6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기 전 예고통지하였으나 이 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 나. 소유자께서는 직권말소예정일 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으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 032-453-2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802호

도림2지구 소3-7호선진입도로 개설공사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8-121호(2018.10.26.)로 사업시행 인가된 도림2지구 소3-7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도림2지구 소3-7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425-6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남동구청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10. 18. ~ 2019. 11. 01. (14일간)
6. 열람장소 및 방법 :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453-2953)
7. 열 랐 서 류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림2지구소3-7호선진입도로개설공사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토지)

○ 도림2지구 소3-7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단위:원)

일련 번호	수용(사용)할 물건의 표시						사업시행자			소 유 자			관 계 인	
	동(리) 명	지번	지목		면적 (㎡)		감정평가사		제시액 (a)+(b)/2	지분	성명	현주소	성명	주소
			공부	실제	공부	편입	대일 (a)	온누리 (b)						
	합계				1,401.0	396.0	280,757,810	283,583,810	282,170,810					
1	논현동	산82-3	임	임	1	1	190,000	193,000	191,500		이*재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길 **	인천산림 조합	인천시 남동구 남촌로 **
2	도림동	427-12	대	대	2	2	2,398,000	2,420,000	2,409,000		김*석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3	도림동	427-15	전	전	9	9	3,411,000	3,492,000	3,451,500		김*석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인천원예 협동조합	인천시 동구 셋골로 ***
4	도림동	427-16	전	전	20	20	7,580,000	7,760,000	7,670,000		김*석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인천원예 협동조합	인천시 동구 셋골로 ***
5	도림동	427-14	창	창	6	6	6,474,000	6,540,000	6,507,000		김*석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6	도림동	산73-42	임	임	19	1	234,000	237,000	235,500		하*숙	인천시 남동구 수골로 **		
				도로		18	1,386,000	1,404,000	1,395,000		하*숙	인천시 남동구 수골로 **		
7	도림동	427-18	전	전	101	101	38,582,000	39,188,000	38,885,000		하*숙	인천시 남동구 수골로 **		
8	도림동	산73-28	임	임	56	56	13,104,000	13,272,000	13,188,000		하*숙	인천시 남동구 수골로 **		
9	도림동	산73-41	임	도로	2	2	154,000	156,000	155,000		하*숙	인천시 남동구 수골로 **		
10	도림동	산73-10	도	도	3	3	234,000	234,000	234,000		서*동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 ***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남동공단 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 가 ***-*
11	도림동	산73-11	도	도	125	125	49,500,000	49,750,000	49,625,000		서*동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 ***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남동공단 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 가 ***-*
12	도림동	산73-21	도	도	22	22	1,716,000	1,716,000	1,716,000		서*동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 ***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남동공단 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 가 ***-*
13	도림동	425-9	과	과	74	73*1487/1958	20,568,140	21,122,530	20,845,335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		대한민국
						73*471/1958	6,514,850	6,690,460	6,602,655	471/1958	남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대동아파트 *-***호		

제1498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10. 18. 금요일

				도로		1*1487/1958	93,410	95,690	94,550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1*471/1958	29,580	30,300	29,940	471/1958	남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_*** 대동아파트 *_***호		
14	도림동	425-10	임	임	517	77*1487/1958	13,917,650	13,859,170	13,888,410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77*471/1958	4,408,340	4,389,820	4,399,080	471/1958	남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_*** 대동아파트 *_***호		
				도로		348*1487/1958 8	20,614,460	20,614,460	20,614,460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348*471/1958	6,529,530	6,529,530	6,529,530	471/1958	남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_*** 대동아파트 *_***호		
				구거		92*1487/1958	5,449,800	5,449,800	5,449,800	1487/1958	한*길			
						92*471/1958	1,726,190	1,726,190	1,726,190	471/1958	남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_*** 대동아파트 *_***호		
15	도림동	425-17	과	과	42	42*1487/1958	11,833,720	12,152,690	11,993,205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대한민국
						42*471/1958	3,748,270	3,849,300	3,798,785	471/1958	남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_*** 대동아파트 *_***호		

16	도림동	425-16	과	과	4	4*1487/1958	1,127,020	1,157,390	1,142,205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대한민국
						4*471/1958	356,970	366,600	361,785	471/1958	남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_*** 대동아파트 *_***호		
17	도림동	425-15	과	과	33	24*1487/1958	6,762,120	6,944,390	6,853,255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대한민국
						24*471/1958	2,141,870	2,199,600	2,170,735	471/1958	남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_*** 대동아파트 *_***호		
				구거		9*1487/1958	840,700	861,210	850,955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9*471/1958	266,290	272,780	269,535	471/1958	남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_*** 대동아파트 *_***호		
18	도림동	425-23	임	임	53	14*1487/1958	2,530,480	2,519,840	2,525,160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14*471/1958	801,510	798,150	799,830	471/1958	남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_*** 대동아파트 *_***호		
				도로		27*1487/1958	1,599,390	1,599,390	1,599,390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27*471/1958	506,600	506,600	506,600	471/1958	남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_*** 대동아파트 *_***호		
				구거		12*1487/1958	710,840	710,840	710,840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12*471/1958	225,150	225,150	225,150	471/1958	남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_*** 대동아파트 *_***호		
19	도림동	425-21	임	임	64	41*1487/1958	7,410,690	7,379,560	7,395,125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41*471/1958	2,347,300	2,337,430	2,342,365	471/1958	남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_*** 대동아파트 *_***호		
				도로		2*1487/1958	118,470	118,470	118,470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2*471/1958	37,520	37,520	37,520	471/1958	남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_*** 대동아파트 *_***호		
				구거		21*1487/1958	1,243,970	1,243,970	1,243,970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21*471/1958	394,020	394,020	394,020	471/1958	남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_*** 대동아파트 *_***호		
20	도림동	425-20	임	임	208	23*1487/1958	4,157,220	4,139,750	4,148,485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23*471/1958	1,316,770	1,311,240	1,314,005	471/1958	남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_*** 대동아파트 *_***호		
				도로		14*1487/1958	829,310	829,310	829,310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제1498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10. 18. 금요일

						14*471/1958	262,680	262,680	262,680	471/1958	남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_*** 대동아파트 *_***호		
				구거		171*1487/195 8	10,129,520	10,129,520	10,129,520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171*471/1958	3,208,470	3,208,470	3,208,470	471/1958	남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_*** 대동아파트 *_***호		
21	도림동	425-22	임	임	10	10*1487/1958	1,807,480	1,799,890	1,803,685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10*471/1958	572,510	570,100	571,305	471/1958	남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_*** 대동아파트 *_***호		
22	도림동	426-1	전	전	29	18	6,876,000	6,984,000	6,930,000		오*범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 모항파도로	평택출산 업협동조 합 (송북지점)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
				구거		11	1,386,000	1,408,000	1,397,000		오*범			
23	도림동	430-22	전	전	1	1	394,000	396,000	395,000		배*호	인천시 남동구 장아산로 *_*** ***동 ***호 (서창동 임광그대 가아파트)		

도림2지구 소3-7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 (지장물)

○ 도림2지구 소3-7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단위:원)

일련 번호	수용(사용)할 물건의 표시							사업시행자				소 유 자			관 계 인	
	동(리) 명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규 격	단 위	비고 (공부 상 면적)	평가 방법	감정평가사		제시액 (a)+(b)/2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대일 (a)	온누리 (b)							
	합 계								15,478,990	15,255,770	15,367,380					
1	도림동	산75-5	과실수	대추나무	1	주			50,000	48,000	49,000		김*석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STS 철판	광고판	1	개			150,000	150,000	150,000		김*석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2	도림동	산70-6	과실수	사과나무	7	주			890,000	890,000	890,000		김*석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과실수	사과묘목	5	주										
3	도림동	산70-3	수목	아카시아 나무	2	주			4,665,000	4,638,000	4,651,500		김*석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수목	단풍나무	1	주										
			수목	오가피	1	주										
			수목	라일락	1	주										
			수목	뽕나무	1	주										
			과실수	사과나무	33	주										
			과실수	사과묘목	12	주										
			수목	잣나무	3	주										
			수목	백일홍	2	주										

			문주	1.1×1.4× 1.65	1	개			300,000	280,000	290,000		김*석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문주	0.7×0.5× 1.36	1	개										
			급수시설	수도계량 기	1	개			100,000	120,000	110,000		김*석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4	도림동	427- 18	울타리	울타리	4.2	M			12,600	12,600	12,600	1/2	김*석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5	도림동	산70- 3	정화조	1.8×1.5× 1.5, 3ton	1	개			1,000,000	1,010,000	1,005,000		김*석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과수원 고정시설	Ø48×1.5 T×4m	20	개			565,000	532,000	548,500		김*석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사과 개별지주 대	4m	33	개										
			자바라	5.4×0.55 ×1.45	1	개			300,000	280,000	290,000		김*석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수목	일본목련	1	주			50,000	49,000	49,500		김*석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6	도림동	산70- 6	사과 개별지주 대	4m	7	개			35,000	28,000	31,500		김*석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		
계									8,117,600	8,037,600	8,077,600					
5	도림동	산73- 28	과실수	사과묘목	2	주			20,000	20,000	20,000		하*숙	인천시 남동구 수골로 **		
6	도림동	427- 18	과실수	사과나무	11	주			1,340,000	1,340,000	1,340,000		하*숙	인천시 남동구 수골로 **		
			과실수	사과묘목	2	주										
7	도림동	산75- 5	울타리	울타리	7.2	M			21,600	21,600	21,600	1/2	하*숙	인천시 남동구 수골로 **		
8	도림동	427- 18	울타리	울타리	4.2	M			12,600	12,600	12,600	1/2	하*숙	인천시 남동구 수골로 **		
계									1,394,200	1,394,200	1,394,200					

9	도림동	산73-10	과실수	사과묘목	1	주			10,000	10,000	10,000		서*동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_*_*호		
10	도림동	산73-21	수목	엄나무	2	주			790,000	830,000	810,000		서*동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_*_*호		
			수목	단풍나무	4	주										
			수목	참나무	3	주										
			수목	사철나무	2	주										
			수목	자귀나무	1	주										
11	도림동	424-9	울타리	석면 슬레이트	89.6	M			342,290	325,170	333,730	17/89	서*동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_*_*호		
계									1,142,290	1,165,170	1,153,730					
12	도림동	425-23	수목	주목	2	주			30,370	33,410	31,890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_*_*호		
13	도림동	425-17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116.1	M2			1,058,060	969,890	1,013,975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_*_*호		
14	도림동	425-15	과실수	배나무	3	주			273,400	250,610	262,005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_*_*호		
15	도림동	424-8	울타리	울타리	49.4	M			150,060	150,060	150,060	2/3*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_*_*호		
16	도림동	425-10	울타리	메쉬웬스	28	M			850,580	893,110	871,845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_*_*호		
			울타리	울타리	45.2	M			119,000	119,000	119,000	26/45*1487/1958				
17	도림동	422-4	울타리	울타리	44.7	M			58,840	58,840	58,840	13/45*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_*_*호		
18	도림동	425-21	대문	철제강관	1	개			759,440	729,070	744,255	1487/1958	한*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_*_*_*호		
계									3,299,750	3,203,990	3,251,870					

19	도림동	425-23	수목	주목	2	주			9,620	10,580	10,100	471/1958	남궁* 북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대동아파트 *_***호		
20	도림동	425-17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116.1	M2			335,130	307,200	321,165	471/1958	남궁* 북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대동아파트 *_***호		
21	도림동	425-15	과실수	배나무	3	주			86,590	79,380	82,985	471/1958	남궁* 북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대동아파트 *_***호		
22	도림동	424-8	울타리	울타리	49.4	M			47,530	47,530	47,530	2/3*471/1958	남궁* 북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대동아파트 *_***호		
23	도림동	425-10	울타리	메쉬웬스	28	M			269,410	282,880	276,145	471/1958	남궁* 북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대동아파트 *_***호		
			울타리	울타리	45.2	M			37,690	37,690	37,690	26/45*471/1958				
24	도림동	422-4	울타리	울타리	44.7	M			18,630	18,630	18,630	13/45*471/1958	남궁* 북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대동아파트 *_***호		
25	도림동	425-21	대문	철제강관	1	개			240,550	230,920	235,735	471/1958	남궁* 북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대동아파트 *_***호		
계									1,045,150	1,014,810	1,029,980					
26	도림동	426-1	과실수	배나무	4	주			480,000	440,000	460,000		오*범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파도로 ***		
계									480,000	440,000	460,00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805호

보 상 계 획 열 램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새말 소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9. 10.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공원:소공원]
 - 명 칭 : 새말 소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새말 소공원	소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산36-7번지	4,144

4. 보 상 시 기 : 2019. 11.(예정) ~
5.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6. 보상대상
 - 토지보상 : 간석동 산36-7번지(공원편입 토지)
 - 지 장 물 : 공원조성 구간에 저축되는 지장물에 한함
7.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8.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9. 열람기간 : 2019. 10. 16. - 2019. 10. 30.

10. 기타사항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 ②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원녹지과에 문의(☎032-453-6142)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입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 권이 외의 권리	
1	간석동 산36-7	임	30,569	4,144	진주강씨 000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000-0				30,569분의 30,5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30,569분의 41

○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간석동 산36-7	계 사	9.41	㎡	이0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000-0	
2		창 고	25.83	㎡			
3		주 택	73.70	㎡			
4		창 고	9.12	㎡			
5		움 막	7.50	㎡			
6		건 사	2.25	㎡			
7		움 막	5.40	㎡			
8		벌 통	4.68	㎡			
9		대 문	1	개			
10		수목(감나무 등)	62	주			
11		창 고	18.38	㎡	김0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000-0	
12		이 동 식 화 장 실	1	개			
13		계 사	4.0	㎡			
14		창 고	7.83	㎡	김0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000-0	
15		창 고	11.17	㎡			
16		창 고	4.0	㎡			
17		창 고	13.84	㎡	이0복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000-0	
18		주 택	59.88	㎡	김0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000-0	
19		계 사	4.0	㎡			
20		수목(감나무 등)	6	주			
21		주 택	41.55	㎡	이0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000-0	
22		수목(으름나무 등)	13	주			

※ 세부내용은 개별통지 및 우리구 공원녹지과에 비치된 자료 열람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업 명	새말 소공원 조성사업			
이의내용				
누락된 토지 및 지장물 내역 ※누락된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 자세히 기재				
기타 요구사항				

보상협의요청 된 토지 및 물건의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808호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8-1616호(2018. 10. 19.)로 사업시행 인가된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35-7 일원
3. 사업 시행자 : 남동구청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10. 16. ~ 2019. 10. 30. (15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 남동구청 건설과 방문 또는 전화(☎453-2712)
7. 열람서류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및관계인현황(토지)

사업명 :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단위:원)

일련 번호	수용(사용)할 물건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동(리)명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현주소	성명	주소
			공부	실제	공부	편입				
	합계	14필지			1,408					
1	수산동	304-3	전	전	55	55	김*섭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전	도	33	33				
			전	전	189	189				
			전	도	43	43				
2	수산동	303-1	전	전	23	23	김*섭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전	도	20	20				
			전	전	46	46				
3	수산동	302-4	대	대	12	12	김*섭	인천 남동구 수산동 ***		
			대	도	3	3				
4	수산동	302-6	대	대	76	76	김*섭	인천 남동구 수산동 ***		
			대	도	6	6				
5	수산동	302-5	전	전	8	8	김*섭	인천 남동구 수산동 ***		
			전	도	1	1				
6	수산동	288-9	전	전	66	66*(4/10)	신*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번길 **, ***동 ***호		
						66*(3/10)	엄*민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번길 **, ***동 ***호		
						66*(3/10)	엄*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번길 **, ***동 ***호		
			전	도	55	55*(4/10)	신*성			

						55*(3/10)	엄*민			
						55*(3/10)	엄*진			
7	수산동	288-10	대	대	81	81*(4/10)	신*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번길 **, ***동 ***호		
						81*(3/10)	엄*민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번길 **, ***동 ***호		
						81*(3/10)	엄*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번길 **, ***동 ***호		
			대	도	42	42*(4/10)	신*성			
						42*(3/10)	엄*민			
						42*(3/10)	엄*진			
8	수산동	300-12	대	대	1	1	신*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 (수산동)		
			대	도	15	15				
9	수산동	301-1	대	대	61	61	신*섭			
			대	도	53	53				
10	수산동	300-13	잡	잡	27	27	심*웅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 ****동 ****호	(주)**은 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가)
11	수산동	300-16	도	도	35	35	심*웅		(주)**은 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가)
12	수산동	299-3	전	전	162	162	이*자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 ***동 ****호 (*동,**아파트)		
			전	도	28	28				
13	수산동	305-8	전	전	31	31	황*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동 ****호 (논현동, *****아파트)		
			전	도	10	10				
14	수산동	305-9	전	전	187	187	황*선			
			전	도	39	39				

소유자 및 관계인 현황(지장물)

사업명 :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단위:원)

일련 번호	수용(사용)할 물건의 표시						비고 (공부상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동(리)명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규격	면적 수량	단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수산동	302-6	화단		10.5	m²		김 *섭	인천 남동구 수산동 ***		
1-1			꽃나무 등 수목		1	식					
2	수산동	288-10	나무		3	주		신 *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번길 **, ***동 ***호		
3	수산동	288-9, 288-10	울타리		6	m		이 *득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신흥동+가)		
4	수산동	300-16, 300-13	헐스		2	m		심 *웅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신항동+가)		
4-1		300-13	건물		5	m²					
					2	m²					
5	수산동	299-3	묘목		10	주		이 *자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 ***동 ****호 (**동, **아파트)		
5-1		600-23	묘목		1	주					
5-2		600-23	그늘망울타리		2	m					
6	수산동	296-7, 294-13	울타리		28	m		유 *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 ***동 ***호 (***동, ***** 아파트)		
7	수산동	305-9	수목		20	m²		황 *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논현동, *****아파트)		
7-1		305-7, 305-9	간이건물		36	m²					
8		300-12	간이건물		2	m²		(주)****경	인천 남동구 구수골로 **		
8-1		300-12, 300-15	컨테이너		1	식					
계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809호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3항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남 동 구 청 장

1. 전자우편 주소 : nd2232@korea.kr
2. 접수기간 : 2019. 11. 17.(일) ~ 2020. 2. 15.(토)

※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음.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817호

공시송달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서창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남 동 구 청 장

- 공고장소 : 남동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기간 : 2019년 10월 17일 ~ 11월 1일(15일간)
-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 기타사항
 1.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2-453-6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확정예정조서

○ 서창지구

번호	종전토지					확정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1		서창동	52	전	329.0		서창동	52	전	329.0	0	0	김*양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77, ***호(효성동,계림팰리스)	주소불명
2		서창동	52	전	329.0		서창동	52	전	329.0	0	0	김*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38, ***동 ****호(간석동, 어울림아파트)	이사
3		서창동	69-1	대	324.0		서창동	69-1	대	324.0	0	0	김*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103, ***동 ***호 (서창동,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폐문부재
4		서창동	75-18	전	394.0		서창동	75-18	전	394.0	0	0	김*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걸재천로39번길 4, ***동 ***호 (서창동, 다청림빌라)	폐문부재

■ 지적재조사사업무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제출인	성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토지의 표시	종전 토지					확정예정 토지					증감 면적 (㎡)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의견 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의견서작성



접수



검토



경계(면적) 조정



임시경계점표지설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처리기관 : 남동구

210mm×297mm[백상지(80g/㎡)]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820호

도시계획시설(시장 : 소래어시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시장 : 소래어시장) 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6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시장: 소래포구 어시장)
 - 명 칭: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3. 사업규모(변경없음): A=4,303㎡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 성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성 명: 소래포구어시장현대화사업협동조합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13, 3층(논현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실시계획고시일 ~ 2020.12.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비고 (최초 결정일)
연 번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총 계				5,118	4,303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68	잡	4,030	4,0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남고3호 2019.02.01.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99	도	888	90	국토교통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462	잡	200	200	인천광역시 남동구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453-2955)

9. 관계 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825호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의 예우 강화
- 인천시 타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액과 일원화 하여 형평성 확보

3.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증액(15만원→20만원) (안 제8조 제2호)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 연 락 처 : ☎ 453-2502, FAX 453-257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5. 참고사항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일
제 출 자 :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의 예우 강화
- 인천시 타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액과 일원화 하여 형평성 반영
(※ 인천시 9개 군구 사망위로금 지급액 20만원)

☐ 주요내용

- 사망위로금 15만원→ 20만원으로 증액 (안 제8조제2호)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15만원 이내”를 “20만원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1. (생략) 2. 사망위로금 : 15만원 이내 3. (생략)	제8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1. (현행과 같음) 2. 사망위로금 : <u>20만원</u> 이내 3.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현 조례]**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3.21 조례 제 902호
 (일부개정) 2012.05.14 조례 제1099호
 (전문개정) 2012.11.16 조례 제1118호
 (일부개정) 2014.04.25 조례 제1186호
 (일부개정) 2015.03.05 조례 제1234호
 (일부개정) 2016.09.23 조례 제1358호
 (일부개정) 2017.11.10 조례 제1436호
 (일부개정) 2018.03.02 조례 제1461호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61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8.3.22, 2019. 6. 28.)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 및 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 6. 28.)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5.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일부개정 2014. 4. 25)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8. 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2017. 11. 10.)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단체 및 사무실 운영비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비
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비

제7조(복지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일부개정 2017. 11. 10.)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일부개정 2017. 11. 10.)

제2장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제8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인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다음 각 호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4. 4. 25, 2017. 11. 10., 2018.3.02, 2019. 6. 28.)

1.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이내(일부개정 2018.3.22)
2. 사망위로금 : 15만원 이내
3. 건강생활지원수당 : 반기별 5만원 이내 (일부개정 2017. 11. 10.)

제9조(수당의 신청) 제8조에 따라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1. 10.)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③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건강생활지원수당은 설,추석 명절이 속하는 달 25일에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일부개정 2014. 4. 25, 2017. 11. 10.)
- ④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사망위로금의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제12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때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채납처분을 준용하되 사망위로금 지급 시에 상계처리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 4. 25)

제13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구)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제15조(위치) 남동구 보훈회관은 (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97-1(구월동 1314-8)

에 둔다. (개정 2019. 6. 28.)

제16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교류·화합 및 복지증진 사항
3.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으로 안보교육의 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② 구청장은 입주하는 보훈단체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는 보훈회관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입주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효율적인 보훈회관 관리를 위한 자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회관의 사용목적에 위배하는 경우 무상 임대를 취소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일부개정 2017. 11. 10.)
2. 구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일부개정 2017. 11. 10.)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19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합한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신청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 및 위탁 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양도금지) 보훈단체 및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하는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보훈회관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원상복구) 수탁자가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4장 보 칙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 11. 10., 2019. 6. 28.)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03. 21. 조례 제 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5. 14. 조례 제 10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 중 “유족”에 한하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6. 조례 제 11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25.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4호, 2015.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8호, 2016. 9. 23.)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6호, 2017.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8조 및 10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1461호, 2018.3.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 거주기간 및 지원대상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8조제1호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19-13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승인 하였기에 동법 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그 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 10. 14.

남 동 구 청 장

1. 허가번호 및 허가일

가. 허가번호 : 제 2019 - 3호

나. 허 가 일 : 2019년 10월 7일

2. 점용·사용의 목적

가. 제5선착장

나. 제5선착장 내 조형등대(전망대) 설치 및 해양친수공간 조성

3. 점용·사용의 장소

: 인천 남동구 논현동 775번지 전면부 공유수면 일원(제5선착장)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사용료

가. 면 적 : 1,355㎡(직접 1,355㎡, 간접 -㎡)

나. 기 간

1) 제5선착장 : 허가일로부터 15년

2) 제5선착장 내 조형등대(전망대) 설치 및 해양친수공간 조성 : 허가일로부터 5년

다. 사용료 : 면 제

5. 점용·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가. 성명 : 남동구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6. 기타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공영개발과 (☎032-453-60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19-13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그 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 10. 14.

남 동 구 청 장

1. 허가번호 및 허가일
 - 가. 허가번호 : 제 2019 - 4호
 - 나. 허 가 일 : 2019년 10월 7일
2. 점용·사용의 목적
 - 가.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의 유출관거 수문설치
 - 나.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의 우수 방류
 - 다.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의 유출관거 설치를 위한 가물막이 설치(일시점용)
3. 점용·사용의 장소 :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대교 하부 해안 옹벽 앞 공유수면
(논현동 111-392번지 인접)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사용료
 - 가. 면 적 : 0.462m^2 (직접 m^2 , 간접 0.462m^2)
※ 일시점용(가물막이 설치) $A=364\text{m}^2$
 - 나. 기 간 : 허가일로부터 30년
 - 1)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의 유출관거 수문설치 : 허가일로부터 30년
 - 2)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의 우수 방류 : 허가일로부터 5년
 - ※ 일시점용(가물막이설치) : 허가일로부터 ~ 2020. 12. 31일까지
 - 다. 사용료 : 면 제
5. 점용·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가. 성명 : 남동구청장
 -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6. 기타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공영개발과
(☎032-453-60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19-135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사업명:새말소공원 조성사업】 사업 실시계획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 2019-131호(2019.10.11.)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공원, 사업명 : 새말소공원 조성 사업】 사업에 대하여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여 불임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및 공원녹지과(☎453-61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 10.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산36-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명 칭 : 새말소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A = 4,144.0\text{m}^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21.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정정)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간석동 산 36-7	임	30,569	4,144	진주강씨 영성군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000-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1	간석동 산 36-7	임	30,569	4,144	진주강씨 영선군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000-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소 계			555.90							
소 계			4.144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19-13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10.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을 결정(변경) 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22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3	8.0~10.0	국지 도로	410	간석동 394-3	간석동 387	일반 도로	-	남동구고시 제1997-5호 (1997. 1. 20.)	
변경	소로	3	16	6.0	국지 도로	422	중1-150 (간석동 394-3)	소2-49 (간석동 387)	일반 도로	-	남동구고시 제1997-5호 (1997. 1. 20.)	폭원축소
기정	소로	2	49	8.0	국지 도로	157	대2-4	소1-13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49	8.0	국지 도로	162	대2-4 (간석동 389-35)	소1-13 (간석동 387-2)	일반 도로	-	-	연장(중점) 변경
기정	소로	3	2	6.0	국지 도로	63	간석동 393-2	간석동 522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2	6.0	국지 도로	64	소3-1 (간석동 393-6)	소1-13 (간석동 393-20)	일반 도로	-	-	가-중점 변경 연장(중점) 변경
기정	소로	3	104	6.0	국지 도로	127	대2-4	소1-13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104	6.0	국지 도로	132	대2-4 (간석동 390-3)	소1-13 (간석동 392)	일반 도로	-	-	연장(중점) 변경
기정	소로	3	107	6.0	국지 도로	142	대2-4	소1-13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107	6.0	국지 도로	146	대2-4 (간석동 389-1)	소1-13 (간석동 387-2)	일반 도로	-	-	연장(중점)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경 사유서	비고
변경	소로1-13	소로3-16	- 위 치 : 간석동 522번지 - 폭원(B) : 8~10m → 6m - 연장(L) : 410 → 422m - 도로명 : 소로1-13 → 소로3-16	- 장기미집행 시설 관리 및 해소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도로폭원 축소 - 도로연장 현행화	
변경	소로2-49	소로2-49	- 위 치 : 간석동 522번지 - 연장(L) : 157 → 162m	- 소로1-13호선 폭원축소에 따른 도로연장(중점) 변경 - 도로연장 현행화	
변경	소로3-2	소로3-2	- 위 치 : 간석동 522번지 - 연장(L) : 63 → 64m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맞추어 가-중점 변경 - 소로1-13호선 폭원축소에 따른 도로연장(중점) 변경 - 도로연장 현행화	
변경	소로3-104	소로3-104	- 위 치 : 간석동 522번지 - 연장(L) : 127 → 132m	- 소로1-13호선 폭원축소에 따른 도로연장(중점) 변경 - 도로연장 현행화	
변경	소로3-107	소로3-107	- 위 치 : 간석동 522번지 - 연장(L) : 142 → 146m	- 소로1-13호선 폭원축소에 따른 도로연장(중점) 변경 - 도로연장 현행화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19-13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로 147 외 3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로 147-1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8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로 147 (운연동)	20140725	행정구역명(운연동)을 이용하여 운연로로 제명	2019101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운연로 147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47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45-2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26-13 (간석동)	20091116	경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00m지점에 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101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경인로599번길 26-1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6-13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9-4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762번길 76 (도림동)	20091116	비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620m지점 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101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비류대로762번길 7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6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74-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63번길 59-2 (구월동)	20091116	인주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640m지점 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101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인주대로763번길 59-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9-2를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8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로 147-1(운연동)	2019.10.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45-2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26-13 (간석동)	2019.10.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74-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63번길 63 (구월동)	2019.10.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